

뉴욕시 노숙자 복지부

제안 규정 관련 공청회 및 의견 개진 기회에 대한 통지

제안된 규정은 무엇입니까? 뉴욕시(New York City, NYC) 노숙자 복지부(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 DHS)는 보호소 위치 선정 통지에 관한 규정을 제안합니다.

공청회는 언제, 어디서 진행됩니까? 공청회는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Zoom을 통해 원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청회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 방법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Zoom(영상 및 음성): <https://www.zoomgov.com/j/1611099761>

또는 www.zoom.us 로 이동해 "Join a Meeting"(미팅 참여)을 클릭한 뒤 미팅 ID: 161 109 9761 을 입력하십시오

전화(음성만): 1-646-828-7666

안내 음성이 나오면 미팅 ID: 161 109 9761 을 입력하십시오

제안된 규정에 대해 어떻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규정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NYC 규정 웹사이트(<http://rules.cityofnewyork.us>)를 통해 DHS 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이메일.** 의견을 DHSRules@dhs.nyc.gov 에 이메일로 보냅니다. 제목란에 "Notice of DHS Shelter Siting"(DHS 보호소 위치 선정 통지)이라고 기재해 주십시오.
- **우편.** 다음 주소로 의견서를 보냅니다.

DHS Rules
c/o Office of Legal Affairs
150 Greenwich Street, 38th Floor
New York, NY 10007

보호소 위치 선정 통지 규정(Shelter Siting Notice Rule)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라는 점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팩스.** 917-639-0413 번으로 의견서를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제목란에 "Notice of DHS Shelter Siting"(DHS 보호소 위치 선정 통지)이라고 기재해 주십시오.
- **공청회 출석을 통한 의견 개진.** 2024 년 12 월 2 일 월요일 오전 10 시 이전에 929-221-7220 번으로 전화하거나 DHSRules@dhs.nyc.gov 로 이메일을 보내 공청회 의견 개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순서대로 발언자를 호명하며 최대 3 분까지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공청회는 구두 증언을 받기 위한 것일 뿐이며,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의견서 제출 기한이 있습니까? 예. 의견서 제출 기한은 2024 년 12 월 2 일 월요일 자정입니다. 우편으로 보낸 것을 포함한 의견서는 2024 년 12 월 2 일까지 인적자원관리국(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공청회 참석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공청회에 참여하는 데 합리적인 수준의 편의가 필요한 경우 저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DHSRules@dhs.nyc.gov 로 이메일을 보내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929-221-7220 번으로 전화를 통해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통지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2024 년 11 월 25 일 오후 5 시까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안된 규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웹사이트(<http://rules.cityofnewyork.us>)에 접속하여 제안된 규정에 관해 온라인으로 접수된 의견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청회 후 빠른 시일 내에 제안된 규정에 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된 모든 의견서 사본, 서신으로 접수된 모든 의견서 사본과 구두로 전달된 모든 의견의 요약본이 DHS 웹사이트에 공개됩니다.

DHS 에서 이 규정을 제정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뉴욕시 헌장(City Charter) 제 603 조 및 제 1043 조입니다. 제안된 해당 규정은 이번 회계연도에 대한 DHS 규정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DHS 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DHS 규정은 뉴욕시 규정(Rules of the City of New York) 제 31 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정 제정 과정을 관할하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DHS 는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뉴욕시 헌장 제 1043 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통지 역시 뉴욕시 헌장 제 1043(b)조의 요건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근거 및 목적의 진술

2019 년 뉴욕주 상원은 뉴욕시 행정법(Administrative Code of the City of New York, 이하 "행정법") 제 21-324 조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여 뉴욕시 노숙자 복지부(이하 "DHS" 또는 "부서")에 신규 노숙자 보호소가 들어서기 전에 해당 지역구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S.7215-A.)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관심 있는 지역 사회 구성원과 선출직 공무원이 제안된 노숙자 보호소에 대한 공공 안전, 교통 및 교육 접근성 관련 우려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성과 투명성을 증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법으로 제정되어 2020 년 법률 제 383 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 년 법률 제 68 장은 공청회 요건이 보호소 위치 선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청회가 아닌 공공 정보 세션을 요구하는 제 21-324 조를 추가로 개정했습니다. 공공 정보 세션은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제안된 노숙자 보호소 및 그 위치에 대해 DHS 에 질문과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대중에게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개정된 제 21-324 조는 DHS 에 여러 조건을 요구합니다. 첫째, DHS 는 "신규 노숙자 보호소에 대한 통지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보호소가 들어설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과 커뮤니티 위원회에 대한 통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연방, 주 및 지역 선출직 공무원에게 향후 보호소를 운영할 잠재적 장소를 찾는다는 연간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DHS 는 해당 보호소가 들어설 지역구에서 "신규 노숙자 보호소의 위치에 대한 공공 정보 세션을 1 회 이상 실시"하고 해당 정보 세션일로부터 최소 14 일 전에 세션의 시간과 장소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DHS 는 뉴욕시 규정 제 31 편(이하 "RCNY")에 새로운 제 6 장을 신설하여 신규 노숙자 보호소에 대한 통지 및 공공 정보제공 절차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된 규정에 대한 부서의 권한은 헌장의 제 389 조, 제 612 조 및 제 1043 조와 행정법의 제 21-324 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밑줄 표시된 부분이 신규 조항입니다.

[삭제된 조항은 대괄호로 표시합니다.]

별표(***)는 수정되지 않은 부분을 나타냅니다.

"해야만 한다(shall)" 및 "반드시 해야만 한다(must)"는 의무 요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달리 명시되거나 해당 맥락에서 달리 지시되지 않는 한 부서의 본 규정에서는 혼용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 1 조. 뉴욕시 규정 제 31 편은 제 6 장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6 장: 신규 노숙자 보호소에 대한 정보 공개

§ 6-01. 정의 본 장에 사용된 다음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a) "실시"란 공공 정보 세션을 지시, 통제, 조율, 주최, 조정 또는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b) "부서"란 뉴욕시 노숙자 복지부를 의미한다.

(c) "신규 노숙자 보호소"란 부서에서 이전에 보호소로 운영한 적이 없는 시설을 의미한다.

(d) "공공 정보 세션"이란 부서 직원이 참석하고 대중에게 공개되는 대면 또는 가상 또는 원격 회의, 컨퍼런스, 집회 또는 기타 모임을 의미한다.

(e) "보호소"란 임시 주거 지원을 신청 또는 수령하는 부서 또는 부서와 계약이나 유사 합의를 맺은 제공자가 노숙자인 성인, 성인 가족 또는 자녀 동반 가족에게 임시 주거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 및 운영하는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

(f) "긴급 노숙자 보호소"란 임시 주거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임시 보호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행정법 제 24 조에 따라 시장이 선포하거나 행정법 제 28 조에 따라 주지사가 선포한 긴급 상황이나 긴급 조달 상황에 개방하는 야간 수면 시설을 갖춘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

§ 6-02. 신규 노숙자 보호소에 대한 통지 절차.

(a) 부서는 제안된 신규 노숙자 보호소를 확인한 후 해당 보호소 운영 계약을 시 감사관에게 등록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모든 연방, 주 및 지역 선출직 공무원과 제안된 신규 노숙자 보호소가 위치할 지역구의 지역 사회 위원회에 서면 통지를 보내 해당 시설 정보와 해당 시설에 보호소를 건설하려는 부서의 의도를 알린다. 이러한 통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i) 제안된 신규 노숙자 보호소의 위치

(ii) 제안된 신규 노숙자 보호소의 수용량

(iii) 제안된 신규 노숙자 보호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

(iv) 제안된 신규 노숙자 보호소를 운영하기 위해 선정된 공급자의 이름(있는 경우)

(v) 제안된 신규 노숙자 보호소의 예상 개방 날짜

(2) 제안된 신규 노숙자 보호소가 들어설 지역구에서 대중이 질문하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공 정보 세션을 1 회 이상 진행한다.

(3) 해당 공공 정보 세션 진행일로부터 최소 14 일 전에 세션의 날짜, 시간, 장소 또는 웹 링크와 제안된 신규 노숙자 보호소 주소를 부서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4) 공공 정보 세션 이후 14 일 이내에 신규 노숙자 보호소 건설 제안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서면으로 접수한다.

(b) 이 조의 절차는 긴급 노숙자 보호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긴급 노숙자 보호소가 설립 당시의 긴급 상황 기간을 초과하여 운영될 경우, 부서는 같은 장소에서 보호소를 운영하기 위한 계약이나 합의를 시 감사관에게 등록하기 전에 이 조에 설명된 통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c) 부서는 매년 3 월 31 일까지 모든 연방, 주 및 지역 선출직 공무원에게 해당 지역구에서 공무원이 신규 보호소의 잠재적 위치를 파악하도록 요청하는 통지서를 전자 및 우편으로 보낸다.

NEW YORK CITY LAW DEPARTMENT
DIVISION OF LEGAL COUNSEL
100 CHURCH STREET
NEW YORK, NY 10007
212-356-4028

헌장 §1043(d)에 따른

인증서

규정 표제: 신규 노숙자 보호소에 대한 정보 공개 관련 규정

참조 번호: 2023 RG 107

규정 제정 기관: 뉴욕시 노숙자 복지부

본인은 본 사무국이 뉴욕시 헌장 제 1043(d)조의 요건에 따라 상기 참조된 제안 규정을 검토하였으며 상기 참조된 제안 규정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i) 법 조항을 인가받기 위해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 (ii) 기타 관련 규정과 상충하지 않습니다.
- (iii)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행할 수 있고 적절한 범위 안에서 좁은 범위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 (iv) 실행할 수 있고 적절한 범위 안에서 규정의 명확한 내용을 설명하며 해당 규정이 부과하는 요건에 대한 근거와 목적을 밝히는 진술문을 포함합니다.

/s/ STEVEN GOULDEN
수석 변호사

날짜: 2024 년 10 월 29 일

NEW YORK CITY MAYOR'S OFFICE OF OPERATIONS
253 BROADWAY, 10th FLOOR
NEW YORK, NY 10007
212-788-1400

헌장 제 1043(d)조에 따른
인증서/분석

규정 표제: 신규 노숙자 보호소에 대한 정보 공개 관련 규정

참조 번호: DHS-6

규정 제정 기관: 노숙자 복지부

본인은 본 사무국이 뉴욕시 헌장 제 1043(d)조의 요건에 따라 상기 참조된 제안 규정을 분석하였으며 상기 참조된 제안 규정이 다음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i) 각각의 규제 대상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이기에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언어로 작성되었습니다.
- (ii) 각 규제 대상 지역사회에서 본 규정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규정 준수 비용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절감했습니다.
- (iii) 본 제안 규정은 위반 사항, 위반 사항의 변경 또는 위반 사항과 관련된 처벌의 변경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양해 기간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s/ Francisco X. Navarro

뉴욕시 시장 운영실(Mayor's Office of Operations)

2024 년 10 월 29 일

날짜